

파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안)

의 안	266
번 호	

제출년월일 : 1997. 4. .

제 출 자 : 파주시장

1. 제안이유

상수도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상수도사업소장의 직급을 5급에서 6급으로 조정하고 상수도사업소의 제명을 상수도관리사업소로 개정하여 시 본청에 수도과를 신설하고자 파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심의 의결함.

2. 주요골자

가. 제명을 "파주시상수도사업소"에서 "파주시상수도관리사업소"로 개정

나. 소장의 직급을 규칙으로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파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상수도사업소"를 "상수도관리사업소"로 한다.

제1조 "상수도사업소(이하"상수도"라 한다)"를 "상수도관리사업소(이하"사업소"라 한다)"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업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제3조 제1호 및 제2호·제8호 규정의 업무에 대하여는 건설도시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 "사업소에 소장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를 "사업소 공무원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u>파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u>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상수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파주시상수도사업소 (이하 '상수도'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소장) ①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업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제3조 제1호 및 제2호·제8호 규정의 업무에 대하여는 건설도시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신 설) 제5조 (공무원) 사업소에 소장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u>파주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u> 제1조 (목적) ----- ----- 파주시상수도관리사업소 (이하 '사업소'라 한다) ----- -----. (삭 제) (삭 제) 제4조 (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업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제3조 제1호 및 제2호·제8호 규정의 업무에 대하여는 건설도시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 (공무원) 사업소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명변경 규정제12조의2및규칙별표1

파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 (1996. 3. 1) 조례 제38호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상수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파주시상수도사업소(이하 “상수도”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위치) 사업소는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100-2번지에 둔다.

제 3 조(업무) 사업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시설의 유지관리(취수장, 정수장, 도수관로, 가압장, 배수지등)
2. 정수의 생산 및 수질의 시험
3. 정수의 가압 및 송수와 급수
4. 가압송수에 대한 조사시험
5. 정수용 약품관리 및 투약
6. 정수장 및 배수지의 경비
7. 전기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
8. 기타 사업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 4 조(소장) ①사업소에 소장을 두명,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업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제3조 제1호 및 제2호·제8호 규정의 업무에 대하여는 건설도시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 5 조(공무원) 사업소에 소장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6 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 기 도

☎ 441-701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3가1 / ☎ (0331) 249-4093 / FAX 249-2228 담당 공재광

문서번호 자치 12200 - 1003
 시행일자 1997. 4. 11. (년)
 (경유)
 받 을 받는곳 참조
 참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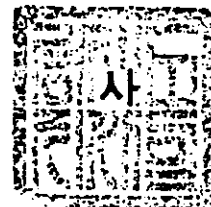
선결			지	
접	일자	1997. 4. 12	시	
수	번호	3089	결	
처 리 과			재	
담 당 자			공	
			람	

제 목 기구.정원 조정 승인

1. 부천 총무 12200-3214 (' 96. 12. 24) 호 및 파주 총무 12130-791 (' 97. 3. 24) 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소속기관 정원으로 본청기구를 설치코자 승인신청한 건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5조6항에 의거 승인하니 관련 자치법규를
 제 (개) 정하여 빠른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덧붙임 : 기구.정원 조정 승인서 1부. 끝.

경 기 도 지



받는곳 : 부천, 파주 (총무과장)

기구 · 정원 조정 승인서

구 분	직 위	직 렬	직 급	정 원	비 고
파주시 상수도사업소	소 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	5 급	△1	
	관리계장	지방행정주사	6 급	△1	
	시설계장	지방토목주사 또는 지방기계주사	6 급	△1	
	시험계장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토목주사	6 급	△1	
	소 계			△4	1997. 4. 11 경기도지사
수 도 과	과 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	5 급	1	
상수도사업소	급수계장	지방행정주사	6 급	1	
	소 장	지방화공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	6 급	1	
도 시 과	도시정비계장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토목주사	6 급	1	
	소 계			4	
합 계				0	

※ 정원시행일 : 1997년 4월 11일

기 구 정 원 규 정	동 시 행 규 칙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1994·12·31 대통령령 제14480호) 개정 1995· 5·16 대통령령 제14647호 1995·12·28 대통령령 제14841호 1996· 8·22 대통령령 제15140호 1996·11·18 대통령령 제15167호(지방공무원인용령) 1997· 2· 4 대통령령 제15267호 제1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1994·12·31 내무부령 제638호) 전문개정 1997. 2. 4 내무부령 제704호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 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地方自治法 第102條(行政機構) ①地方自治團體의 行政事務를 分掌하기 위하여 필요한 行政機構를 두되. 市·道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고. 市·郡	

기 구 정 원 규 정	동 시 행 규 칙
⑥기본인력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7.1〉	제7조(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내용등) 영 제14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인관리 기관별·직급별 인력 배치계획 2. 신규인력증원분야와 인력감축분야 및 그 내역 3. 일반회계에 있어서 인건비 관련비용의 비율 4. 일용직·비상근인력 운용분야 및 그 내역 5. 민간위탁 및 공사·공단전환 계획 6. 공무원의 배치를 수반하는 신규시설투자 및 장비확충 계획
제15조(정원의 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별 정원채정기준에 의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정원채정기준) ①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②영 제16조제2항 및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은 별표5와 같다.

기 구 정 원 규 정	동 시 행 규 칙
임무분야의 인력 ④시·도지사는 당해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시·군·구의 정원을 시·도의 정원으로 조정할 수 없다. 1. 시·도의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시·군·구의 지방공무원 정원으로 조정할 경우에는 시·도지방공무원 정원 의 100분의 10 범위내 2. 시·군·구 상호간에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감축되는 시·군·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5 범위내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소속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정원을 조정하여 본청에 기구를 설치할 수 없다.<신설 95.5.16>	

기 구 정 원 규 정	동 시 행 규 칙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본청과 소속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이 연계된 조직개편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5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정원을 조정하여 본청에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내무부장관(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95.12.28) ⑦ 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을 조정할 경우 그 조정결과를 조정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별정직 정원)① 별정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열거한 경우에 한하여 책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별정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할 경우는 직무의 성격상 일반적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되, 미리 각 직무분야별·상당계급별로 책정하되, 그 수는 내무부령이 정	